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8. 16.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7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행정주사”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행정주사”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으로”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산재예방지도팀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를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으로, 산재예방지도팀장은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

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주사”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행정주사”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를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 본문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1조의2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명(5급)”을 “10명(4급 3명, 5급)”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16명(4급)”을 “17명(4급 1명, 4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같다”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4명(4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5, 별표6, 별표6의2, 별표6의3, 별표10, 별표11, 별표11의2, 별표13, 별표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62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22
고위공무원단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5
임기제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18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6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통계사무관	4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65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직업상담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직업상담주사	1
전산주사	10
통계주사	4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2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62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직업상담주사보	2
전산주사보	4
통계주사보	6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2
행정서기	1
행정서기 · 통계서기 · 직업상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
운전서기	2
시설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 담당)	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646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39
고위공무원단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5
임기제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38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6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통계사무관	4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66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상담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직업상담주사	1
전산주사	10
통계주사	4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2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55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7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직업상담주사보	2
전산주사보	4
통계주사보	6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2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 · 통계서기 · 직업상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
운전서기	2
시설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 담당)	1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647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40
고위공무원단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
임기제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7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38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6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통계사무관	4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59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상담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직업상담주사	1
전산주사	10
통계주사	4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2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55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9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직업상담주사보	2
전산주사보	4
통계주사보	6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2
행정서기	1
행정서기 · 통계서기 · 직업상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
운전서기	2
시설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 담당)	1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7명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646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39
고위공무원단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
임기제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7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38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6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통계사무관	4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59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상담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직업상담주사	1
전산주사	10
통계주사	4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2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55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7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직업상담주사보	2
전산주사보	4
통계주사보	6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2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 · 통계서기 · 직업상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
운전서기	2
시설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 담당)	1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7명으로 본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6,746
일반직 계	6,746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	20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967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5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41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
직업상담주사	4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2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
행정주사보	1,115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

직업상담주사보	36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5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2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9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
행정서기	399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
직업상담서기	239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5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8
방호서기	1
행정서기보	112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70
직업상담서기보	407
행정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32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기록연구사	6
운전서기보	46
사무운영서기보	52
방호서기보	3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6,736
일반직 계	6,736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	118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849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5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39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1
직업상담주사	4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2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
행정주사보	1,014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

직업상담주사보	36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8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8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9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
행정서기	497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
직업상담서기	229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8
방호서기	1
행정서기보	204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70
직업상담서기보	411
행정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32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기록연구사	6
운전서기보	47
사무운영서기보	29
방호서기보	3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의2] <신설 2023. 6. 27.>

[적용일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6,736
일반직 계	6,736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	11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819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5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39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1
직업상담주사	4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2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

행정주사보	1,014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
직업상담주사보	36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8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8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9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
행정서기	497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
직업상담서기	229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8
방호서기	1
행정서기보	204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70
직업상담서기보	411
행정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32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기록연구사	6
운전서기보	47

사무운영서기보	29
방호서기보	31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노동부령 제27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12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명, 행정주사 8명으로 본다.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 계	362	90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1	89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5	26	109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3	11	7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3		3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3	2	11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총 계	366	94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5	93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6	28	10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2	11	7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4	4	2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1	2	9

고용노동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7조 및 제27조의2 관련)

1. 노사관행개선과(존속기한: 2025년 4월 10일)

총계	6
일반직 계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2. 임금근로시간정책과(존속기한: 2025년 4월 10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 ③ (생 략)	제2조(대변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홍보기획팀장 · 디지털소통 팀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u> 또 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u>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 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 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국제협력 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u>부</u> <u>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u> <u>관으로</u> ,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 제 서기관으로, 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은 <u>서기관</u> <u>·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⑥ ----- ----- ----- ----- <u>부</u> <u>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u> <u>서기관으로</u> ----- ----- ----- <u>과학기술</u> <u>서기관 · 서기관</u> ----- -----.
⑦ ~ ⑮ (생 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관) ① ~ ③ (생 략)	제4조(감사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u> <u>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u> , 고 객지원팀장은 <u>서기관 · 기술서</u>	④ ----- <u>부이사관 · 과</u> <u>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u> , <u>고객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u>

<u>기관</u>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⑥ (생략)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⑥ (생략) ⑦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으로, 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u>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 ⑱ (생략)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④ (생략) ⑤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⑥ ~ ⑫ (생략)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⑤ ~ ⑧ (생략)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⑥ (생략) ⑦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⑧ ~ ⑮ (생략)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u>관・서기관</u>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으로, 팀장은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u> -----. ⑧ ~ ⑱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⑧ ~ ⑮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	--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감독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이사관 · 과
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행정사
무관 · 행정주사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
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으로 -----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
장, 국민취업지원1과장, 국민취
업지원2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
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
사무관으로, 산재예방지도팀장
은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
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
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③ ~ ⑬ (생략)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 · 태
백지청장 · 영주지청장 · 안동지
청장 · 영월출장소장 및 서산출
장소장은 행정사무관 · 통계사
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청장
· 강원지청장 · 창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
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
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
무관으로, 산재예방지도팀장은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
-----.

③ ~ ⑬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

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행정주사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

사로 보하고, 팀장은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
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 다
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
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
장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③ ~ ⑨ (생략)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
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무지원
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
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⑧ (생략)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
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
국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
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 · 울산 · 강원 · 충북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 --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
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이사관 · 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
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
국장)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
관 또는 서기관으로-----
----- 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
다. -----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3명(7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삭 제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퍼센트-----

-----.

③ -----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생 략)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16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 10명(4급 3명, 5급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 10퍼센트-----

----- 17명(4급 1명, 4급 -----

③ -----.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

----- 10퍼

센트-----

----- 같으며, 별표 13

의 정원 중 4명(4급 4명)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

-----.

----- 10

퍼센트-----

-----.

⑤ -----

-----.

----- 10퍼센트-----

과 같다.

⑥ (생략)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애인고용과장, 화학사고예방과장, 고양지청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7조(노사관행개선과) ① 노사관행개선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

--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제27조(노사관행개선과) ① ----- 과학기술서기관

<u>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② (생 략)	<u>또는 서기관</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② (현행과 같음)
--	--